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2021. 03.

결재	계	부장	교감	교장

김제고등학교

1994학년도 개정
2001학년도 4월 20일 개정
2002학년도 4월 16일 정비
2003학년도 9월 1일 정비
2004학년도 7월 1일 정비
2005학년도 5월 1일 정비
2005학년도 9월 15일 정비
2006학년도 4월 20일 정비
2007학년도 5월 18일 정비
2008학년도 5월 28일 정비
2009학년도 5월 8일 정비
2010학년도 4월 14일 정비
2011학년도 4월 16일 정비
2012학년도 4월 5일 정비
2013학년도 4월 2일 정비
2013학년도 7월 17일 정비
2014학년도 4월 22일 정비
2014학년도 5월 22일 정비
2014학년도 9월 23일 정비
2014학년도 12월 24일 정비
2015학년도 4월 20일 정비
2016학년도 4월 8일 정비
2017학년도 4월 3일 정비
2018학년도 3월 30일 정비
2019학년도 3월 26일 정비
2019학년도 5월 22일 정비
2020학년도 3월 23일 정비
2020학년도 5월 11일 정비
2020학년도 5월 22일 정비
2020학년도 5월 28일 정비
2020학년도 6월 10일 정비
2021학년도 3월 18일 정비



차례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1
제 2 조(방침)	1
제 3 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2

제2장 출결상황 관리

제 4 조(출결상황관리)	3
---------------	---

제3장 교과학습발달 상황평가

제 5 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7
제 6 조(지필평가 출제 및 배점)	8
제 7 조(과목별 평가영역별 비율 및 평가방법)	9
☞ 2021학년도 과목별·영역별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10
제 8 조(고사시간표)	18
제 9 조(출제 원안 및 제출)	18
제 10 조(고사관리 및 시행)	18
제 11 조(채점 및 답안지 처리)	20
제 12 조(수행평가)	20
제 13 조(학업성적 결과 처리: 성적단표 및 일람표작성)	23
제 14 조(복학 및 재·전·편입학, 해외 귀국 학생의 성적 처리)	30
제 15 조(소속학교 이외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31
제 16 조(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	34
제 17 조(인정점 부여)	35
제 18 조(부정행위자 처리)	37

제4장 학교 생활기록부

제 19 조(교과 학습 발달 상황 관리)	38
제 20 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관리)	41
제 21 조(독서활동상황 관리)	42
제 22 조(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43
제 23 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리)	43
제 24 조(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43

제5장 진급 및 졸업

제 25 조(진급 및 졸업)	44
제 26 조(진급 및 졸업 보류)	44
제 27 조(원급자)	44

제6장 표창

제 28 조(표창의 종류와 기준)	44
--------------------------	----

제7장 자료의 관리

제 29 조(사용자 및 프로그램과 보안관리)	45
제 30조(자료의 정비와 준용 등)	46

부 칙	46
별 지 : 1.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47
별 지 : 2. 시기별 학업성적관리 업무 추진	50
별 지 : 3.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53
별 지 : 4. 정기고사 교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서술형 평가문항 채점 기준표 양식	60
별 지 : 5.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63
별 지 : 6. 2021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64
별 지 : 7. 학생평가 관련 사안(민원포함) 보고	65
별 지 : 8.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66
별 지 : 9. 이의신청 기간 운영	67
별 지 : 10.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	68
별 지 : 11.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지침	69

2021학년도 김제고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교육부 훈령 제365호, 2021.1.4.)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로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및 성적관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대학진학 전형에서의 고교성적 내신제를 지원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있다.

제 2조 【방침】

1.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¹⁾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평가를 실시한다.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①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 ②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 ③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기초교과 및 탐구교과는 제외)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²⁾인 과목
 - 나. 시수가 적은 과목(1단위)

1)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2)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4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본교에 부모(형제자매, 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결재,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전라북도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별지9]에 따르며,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0점 처리한다. 또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1.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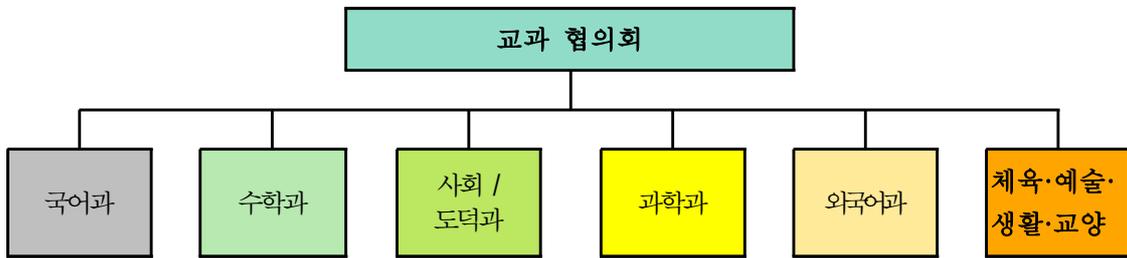
제 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바람직한 활용을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학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p>위 원 장 : 교장</p> <p>부위원장 : 교감</p> <p>위 원 : 혁신연구부장, 교무기획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평가·성적처리계(간사: 성적 관련 업무시), 학교생활기록부 담당(간사: 학생부 정정 및 학생부 관련 업무시)</p>

4. 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6.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7. 위원회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8.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
 - 가. 학업 성적관리 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의제기 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 9.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협의회는 각 교과별로 해당 교과 담당 교사 수를 감안하여 구성하되 유사 교과는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나.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정
 -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제 2 장 출결상황 관리

제 4조 【출결상황관리】

-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 (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 (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유예 후 다음해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 사이의 수업일수, 출결상황, 학업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은 삭제함).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유예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사이의 결석일수는 삭제함).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현장실습’ 이수로 처리함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청첩장, 부고 등으로 담임교사가 확인함.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차.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자)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단, 정기교사기간 결석으로 인해 <성적 인정점 부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의료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단, 월 1회에 한정함)

※ 출석인정 시 성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4. 결석은 질병과 미인정 및 기타 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2018.04.06.부터 적용)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신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과 하교시각(16:30)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1)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2)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3)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라. 위의 제4조 3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자. 장기결석은 7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6.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가. 질병, 미인정, 기타 결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개근등을 입력한다.

※ 질병, 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 등의 그 사유를 입력함.

나.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다. 지각, 조퇴, 결과횟수의 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다.

라. 출결상황-특기사항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예)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마. NEIS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 :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한다. (예) 교외체험학습, 감기, 태만, 늦잠, 피의자 조사, ○○계 학원수강 등)

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제 5조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는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난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재 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8. 교과학습발달평가의 성취도와 석차의 산출은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9. 정기고사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 6조 【지필평가 출제 및 배점】

1. 매 고사 시 평가문항은 50분 동안 충분히 생각하여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2.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3. 학기말 성적은 1차 고사와 2차 고사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여 과목별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처리하며, 합계는 1차, 2차, 수행평가의 합계가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평가 한다.
4. 평가문제는 타당도 · 신뢰도 ·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 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5.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채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나.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다.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마.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바.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사.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6. 지필평가 중 서답형 총 배점 비율은 30%이상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서답형 :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7.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
8.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 방식의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 1차지필 서술형 20% + 2차지필 서술형 20%
- 1차지필 서술형 10% + 2차지필 서술형 30%
- 1차지필 서술형 0% + 2차지필 서술형 40%

9. 모든 교과목의 평가는 지필고사(수행평가 100% 교과목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되, 교과목에 따라 평소 평가를 수행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의 비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마련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0.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사안 인지 후 즉시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11. 고사원안은 본교에서 마련한 통일된 양식을 이용하며,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12. 문항정보표는 본교에서 마련한 통일된 양식을 이용하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나이스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13.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 등이 철저히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제 7조 【과목별·평가영역 비율 및 평가방법】

과목별·평가영역 비율(100%=지필평가 반영비율+ 수행평가 반영비율)과 평가방법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수행평가 영역의 “태도”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1. 평가대상 과목은 반드시 다음 주어진 항목의 비율에 따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평가대상 과목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지필평가 반영비율 + 수행평가 반영비율)
 - ※ 아래의 과목별·영역별 평가방법 및 반영비율은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평가상의 유의점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 내용이다. 단, 수행평가 영역의 “태도” 평가는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평가영역 항목의 소항목에 포함 시켜 평가할 수는 있다. ※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별 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 2021학년도 과목별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국어과

(1학년 국어,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독서, 3학년 1학기 화법과 작문, 3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

과 목 명	1학기 :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2학기 :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이해 활동	표현 활동	독서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 수학과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 I, 2학년 2학기 수학 II, 3학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과 목 명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배움평가	역량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5점	35점 (20점)	65점	35점 (2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19.5%	10.5%	19.5%	10.5%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 영어과

(1학년 영어, 2학년 1학기 영어I, 2학년 2학기 영어II, 3학년 1학기 실용영어, 3학년 2학기 영어 독해와 작문)

과 목 명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쓰기	말하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5점	35점 (20점)	65점	35점 (20점)	2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19.5%	10.5% (6%)	19.5%	10.5% (6%)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3학년 영어회화)

과 목 명	[1학기] 영어 회화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쓰기	말하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	-	65점	35점 (20점)	25점	20점	25점
세부 반영비율	-	-	19.5%	10.5% (6%)	25%	20%	25%
기본점수	-		0점		10점	8점	10점

과 목 명	[2학기] 영어 회화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쓰기	말하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65점	35점 (20점)	-	-	25점	20점	25점
세부 반영비율	19.5%	10.5% (6%)	-	-	25%	20%	25%
기본점수	0점		-		10점	8점	10점

▣ 사회과

(1학년 통합사회, 3학년 사회문화)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 문화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프로젝트	모듬협력 문제해결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2학년 한국지리)

과목명	한국지리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포트폴리오	학습참여도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3학년 생활과 윤리)

과목명	생활과 윤리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포트폴리오	학습참여도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10점)	70점	30점 (1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1학년 한국사, 2학년 세계사)

과 목 명	한국사, 세계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수업준비 및 학습 정리	교과내용 지도로 정리	교과내용 시대별 비교·조직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4점	8점

■ 과학과

(1학년 통합과학, 2학년 생명과학 I, 2학년 지구과학 I)

과 목 명	통합과학,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탐구평가	배움평가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2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6%)	21%	9% (6%)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1학년 과학탐구실험)

과 목 명	과학탐구실험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탐구보고서	자유탐구	융합평가
영역만점	40점	30점	30점
세부 반영비율	40%	30%	30%
기본점수	16점	12점	12점

(3학년 생명과학Ⅱ, 3학년 지구과학Ⅱ, 3학년 생활과 과학)

과 목 명	[1학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생활과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탐구평가	배움평가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	-	70점	30점 (2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	-	21%	9% (6%)	30%	20%	20%
기본점수	-		0점		12점	8점	8점

과 목 명	[2학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생활과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0%)		탐구평가	배움평가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	-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6%)	-	-	30%	20%	20%
기본점수	0점		-		12점	8점	8점

■ 체육과

(1학년 체육, 2학년 1학기 체육, 2학년 2학기 운동과 건강)

과 목 명	[1학기] 체육, 운동과 건강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건강	배구	보고서	정의적 영역 (과정평가)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걷기	기능 및 경기			
영역만점	10	20	40	20	10	
세부 반영비율	10%	20%	40%	20%	10%	
기본점수	4점	8점	16점	8점	4점	

과 목 명	[2학기] 체육, 운동과 건강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배드민턴	농구	보고서	정의적 영역 (과정평가)
	제자리 멀리뛰기	기능 및 경기	기능 및 경기		
영역만점	10	30	30	20	10
세부 반영비율	10%	30%	30%	20%	10%
기본점수	4점	12점	12점	8점	4점

(3학년 운동과 건강)

과 목 명	[1학기] 운동과 건강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건강	배구	보고서	정의적 영역 (과정평가)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걷기	기능 및 경기		
영역만점	10	20	40	20	10
세부 반영비율	10%	20%	40%	20%	10%
기본점수	4점	8점	16점	8점	4점

과 목 명	[2학기] 운동과 건강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건강	배드민턴	보고서	정의적 영역 (과정평가)
	제자리 멀리뛰기	유연성	기능 및 경기		
영역만점	10	20	40	20	10
세부 반영비율	10%	20%	40%	20%	10%
기본점수	4점	8점	16점	8점	4점

■ 음악과(1학년 음악)

과 목 명	음 악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표현		감상	생활화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가창	기악	보고서	
영역만점	-	-	-	-	3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	-	-	-	30%	30%	20%	20%
기본점수	-	-	-	-	12점	12점	8점	8점

(2학년 음악연주)

과 목 명	음악연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연주		비평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가창	기악	감상	연주관람
영역만점	-	-	-	-	30점	30점	20점	20
세부 반영비율	-	-	-	-	30%	30%	20%	20%
기본점수	-		-		12점	12점	8점	8점

■ 미술과 (2학년 미술)

과 목 명	미술							
평가방법	수행평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표현3		감상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크로키	젠탱글	컷만화	이모티콘	점묘화	시화	미술신문	미술퍼즐
영역만점	25점		25점		25점		25점	
세부 반영비율	25%		25%		25%		25%	
기본점수	10점		10점		10점		10점	

■ 한문과 (2학년 한문 I)

과목명	한문 I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한문독해능력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3학년 한문Ⅱ)

과목명	[1학기] 한문Ⅱ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한문 독해능력	한문 에세이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5점	25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	-	21%	9%	25%	25%	20%
기본점수	-		0점		10점	10점	8점

과목명	[2학기] 한문Ⅱ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0%)		한문 독해능력	한문 에세이	포트 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영역만점	70점	30점	-	-	25점	25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21%	9%	-	-	25%	25%	20%
기본점수	0점		-		10점	10점	8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수학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포트폴리오(학습지, 학습일지)		배움평가(구두질문형, 서술형)		역량평가
영역만점	-	30점	20점		20점		30점
세부 반영비율	-	30%	20%		20%		30%
기본점수	-	0	8점		8점		12점

과목명	물리학 I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수업밀착형평가	과학예술융합평가	탐구평가
영역만점	-	3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	30%	30%	20%	20%
기본점수	-	0	12점	8점	8점

3. 수행평가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8조 【고사시간표】

정기고사 시간표는 고사 실시 2주일 전에 발표한다.

제 9조 【출제 원안 및 제출】

1. 출제원안은 고사실시 10일 전까지 평가업무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2. 고사문제는 동일학년, 동일교과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 문항은 학년별 교과별 학습목표 도달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객관도,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하여 교과서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필고사 시 서답형 문항 출제는 30%이상 출제한다.
5. 출제원안에 배점을 표시하고 서답형 문항은 배점은 물론 답안의 정도에 따른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제 10조 【고사관리 및 시행】

학생의 성적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사 관리를 한다.

1. 평가문제 인쇄 및 보완 관리
 - 가.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 담당 교사를 지정(평가계)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나. 평가담당 부장교사와 담당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다.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 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특별실, 교무실등), 인쇄실, 평가관리실(본관 2층 서편 위치)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및 인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친인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라. 인쇄된 문제지는 인쇄실에서 즉시 출제교사에게 인계하고, 파지는 당일 발생분을 종합하여 고사관리 담당자의 책임 하에 파쇄 한다.
 - 마.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평가관리실]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바. 인쇄·포장된 문제지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평가업무담당 교사가 별도 문제지 보관함 **[평가관리실 금고]**에 일괄 보관하여 관리한다.

2. 고사 시행

- 가.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 나. 정기고사 시정표상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절대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훼손된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새 답안지에 옮겨 기록한다.
- 다. 평가문제 출제, 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완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 라.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 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의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가 감독을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전에 반드시 평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 담당교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마.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³⁾),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감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교사가 그 책임을 진다.
- 바.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시험 시작 전 감독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아.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자.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차.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업무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 카. 평가업무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교사) 인계하여 채점하게 한다.
- 타.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제 11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1.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지정장소(학교) 이외로의 반출을 자제한다.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성적 공지 후 3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필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이의신청 기간은 운영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11]을 참고)
5.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6. 교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 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7.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고사 결과물(답안지, 교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형 채점기준표 포함)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성적 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조 【수행평가】

1. 수행평가의 정의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 즉, 선택형 지필평가 이외 다른 모든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 (개념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3. 수행평가 시행

가. 수행평가의 영역, 반영비율, 방법, 횟수,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 특성에게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듣기 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체육·예술교과(군)**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학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출학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수행평가 성적의 공개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이의 신청 및 정정기간은 수행평가 결과 공개 후 3일간으로 한다.)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

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기본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듣기·말하기도 이에 준하여 적용

- 단, 수행평가 100%인 과목의 경우 지필평가 득점 점수가 없으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 점수를 처리한다.

- 1) 첫 번째 -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 2) 두 번째 -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목의 성적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3) 세 번째 - 해당학생의 나머지 응시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단, 1차 고사, 2차 고사 전교시를 결시하여 모든 과목의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각 과목의 수행평가 최하점을 부여 한다.)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를 의미)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당해 학년 종료 시까지 담당교사가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 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독서 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 수행평가 총점의 30% 내외를 교과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 권장한다.
 - 학교별, 학년별, 교과별로 평가 요소를 다양하게 정하여 실시한다.
 - 반영 방법 : 교과협의회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여부는 국

어과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수행 평가의 시행 절차

- 가. 수행평가는 학습과제 분석 → 필수 교육목표의 선정 → 출제계획 수립 → 학생·학부모에게 예고 및 홍보 → 수행평가 문항제작 →수행평가 실시 및 결과의 정리 →평가 결과 활용의 과정을 거친다.
- 나. 평가하고자하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힌다.
 - 평가목적(집단의 특성 진단, 개인의 성적 순위 결정,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평가 결과를 활용할 사람(교사, 학생 등), 평가대상(대상학년·수·특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밝힌다.
- 다. 평가하고자하는 교육목표(성취기준)를 명확히 한다.
 - 성취기준이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성취기준을 실제 얼마나 성취했는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평가기준)을 명확히 한다.
 - 평가기준이란 ‘특정성취기준에 대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몇 개로 나누고(예:상·중·하, 5점·4점·3점·2점·1점) 각 수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
- 마. 적절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 평가하는 이유, 성취기준, 평가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 평가방식에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 평가문항의 검토와 수정(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등 고려)을 한다.
- 바.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동일성, 동시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 단편적 1회성 평가가 아닌 학생 개인의 변화 발달 과정을 종합적이고 전체적,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인지적 영역(창의성, 문제 해결력), 정의적 영역(행동발달 상황, 흥미, 태도) 심동적 영역(체력, 운동기능)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사. 미리 개발된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채점 계획(채점 방법, 채점자 결정 등)을 수립하여, 명확한 채점 기준에 의한 교차 채점 등으로 객관성,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한다.
- 아.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평가 결과를 수업과 연계·환류(feed back)하여 학습 지도와 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 13조 【학업성적 결과 처리: 성적단표 및 일람표작성】

1. 2020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2019학년도 입학한(2021학년도 3학년)의 ‘한국

사'는 2009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적용 받는다. 각 학년에 대한 성적 산출법은 교육부 훈령 제280호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적용일정에 각각 따른다.

2.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과 '나~마'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나.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시 외 과목 포함)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분포비율을 산출한다.
 - 다.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교과Ⅱ,Ⅲ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 라.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과목과 일반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 마. 고등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오순도순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단,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분포비율'을 산출,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하고 교양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등급에 'P'처리를 한다.
3.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 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체육예술	○	○	- ※ 성취 도별 분 포 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 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 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II	○	○	○	5단계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III	○	○	○	5단계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 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 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통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 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 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 의 과목 제외	

* 전문 교과 I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모든 과목(전 학년))에 ‘석차등급’란에 ‘.’ 표기 한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보통교과]

2021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석차 (동석차수)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0	95	A	1	4(15)/532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0	71	C	5	273/5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전문교과Ⅱ]

2021학년도 제1학기
상업 경제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진로 선택 과목]

2021학년도 제1학기
실용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B(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30.2) B(45.3) C(24.5)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 \times 95 / 100 = 28.50)$ 는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000 환산점수 $8.80(10 \times 44 / 50 = 8.80)$ 는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때임.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통교과의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성적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전문교과 II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성적일람표 환산점수 산출 방법은 ‘전문교과 II’의 방법을 준용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

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다.

5.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 등급	~ 4% 이하
2 등급	4% 초과 ~ 11% 이하
3 등급	11% 초과 ~ 23% 이하
4 등급	23% 초과 ~ 40% 이하
5 등급	40% 초과 ~ 60% 이하
6 등급	60% 초과 ~ 77% 이하
7 등급	77% 초과 ~ 89% 이하
8 등급	89% 초과 ~ 96% 이하
9 등급	96% 초과 ~ 100% 이하

6.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전문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7.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어,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5'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동점자 처리 규정>

1순위	지필평가(학기말)의 점수가 높을 경우
2순위	수행평가의 점수가 높을 경우
3순위	1차고사 지필평가의 점수가 높을 경우
4순위	2차고사 지필평가의 점수가 높을 경우

8.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공동출제 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수강생 성적통합산출처리:무학년제)

※ ‘특정 과목’을 ‘두 개 학년 이상’이 ‘동일 시기’에 ‘동일 단위’를 이수하는 경우 수강자를 통합하여 평가한다.(2021학년도 전라북도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지침)

2) 복수계열 학과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는 계열별 수강학생 수를 수강자 수로 한다. 단, 동일 전문계열 내에서는 위의 1)에 준한다.

나. 위 ‘가. 1)’의 상황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

서로 다른 학년의 3개년 교육과정편성상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특정학기’에 ‘이수단위가 동일’ 하더라도, ‘시작학기 또는 총 이수단위가 다를 경우’,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교과진도계획표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보아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수강생 성적 분리산출처리)

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 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라.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퇴학, 자퇴, 제적, 휴학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퇴학, 자퇴, 제적, 휴학’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9.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의한다.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10.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03쪽 <예시>표 참조

※ 거점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

11.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이수 처리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2.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처리

가)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2020학년도기준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예: 성취율 40% 미만)

나)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3.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조 【복학 및 재·전·편입학, 해외 귀국 학생의 성적 처리】

1.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4.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5.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65호)’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 학생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가.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란은 공란으로 둔다.

※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다.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 15조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

리) 및 「2021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별지 10]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 필요 학생의 성적처리(별지19 참고)

1) 학적

-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

가) 출결은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나) 해당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65호)」 [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가) 성적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소속학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나)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다.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처리

1)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2) 학적

가)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나)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를 허가하여야 한다.

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위 라)항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2) 출결

가) 소년보호기관별 출석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 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를 참조해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3) 성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가~마'항 이외의 사항은 '[별지19]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고

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

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2)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를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4)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를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직업과정 위탁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 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 다)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 라)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P(이수)’로 처리한다.
 - 교육과정 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 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위탁 교육기간의 교육 일수는 재적 학교의 수업 일수로 산정한다.
- 2)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 16조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7조 【인정점 부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인정점 부여 및 관리(산출) 방법을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기 내에 지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인정점 부여 및 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휴학, 유급,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끝나 재·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5.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 기준 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다만, 지필평가 최종인정점 산출을 위한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따라 처리한다.

1순위 :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다.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석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 \text{인정기준점수}$
 - 2) $\text{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 3) $\text{인정기준점수} \times 0.8 (\text{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6.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방법

5. 나. 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한다.

※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7.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및 징계로 인한 결시자와 특별교육 수강기관에 들어가 교육중인자 중에서 결시한자 (최하점이 0점인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준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신설>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마. 기타의 경우

1) 교외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의 경우: 고사기간(추가고사 포함)에 교외체험학습,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는 경우, 출석은 인정결석으로 하고, 성적 인정비율은 미인정 결석과 같이 처리한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

2)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의 경우: 고사기간(추가고사 포함)에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추후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출석은 인정결석으로 하고, 성적 인정비율은 질병결석과 같이 처리한다.(80% 인정)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여 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100% 인정

바. 1회 실시한 교과외의 경우

5. 나항, 또는 6항에 따른 기준점수로 항목별 인정점 부여 비율을 반영한다.

(단, 미인정 결석의 경우 해당 학년 및 해당 계열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준다.)

사. 집중이수 과목을 전입이나 복학의 이유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전입이나 복학 뒤에 시행한 고사의 성적을 100% 반영한다. 단, 병결이면 80%, 기타결이면 80%, 공결이면 100%, 반영한다.

아. 1, 2차 고사를 모두 실시하지 못한 학생들은 5. 나. 항 또는 6항에 따른 기준점수로 공결의 경우 100%반영하고, 병결인 경우 80%, 기타결인 경우 80%를 반영한다.

제 18조 【부정행위자 처리】

1. 부정행위 유형

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나.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또는 책상·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

다.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라.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바. 시험 종료 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아. 시험문제 누설(해킹)이나 문제지 등을 절취한 행위

자.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2. 부정행위예방 조치

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나.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 다.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 라.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 마.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 바.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 사. 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제에서 철저히 관리
- 아.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 자.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3. 부정행위자 처리

- 가.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다.
- 나. 부정행위 발견 시 감독교사는 반드시 답안지에 부정행위자(부정행위 동조자도 동일하게 처리)임을 표시하고 해당교과의 성적은 0점 처리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제 4 장 학교 생활기록부

제 19조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관리】

1.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가.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 나.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다. 전문교과Ⅱ(2009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라.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가. 체육·예술(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과 방과후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가. 체육·예술(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1)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2)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5. 전문교과Ⅰ 및 보통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2020학년도 1,2학년),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 을 입력한다.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도 ‘석차등급’란에 ‘.’ 표기 한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7.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8.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기재 예시>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당해 학기 관련 과목 미개설 시)

윤리와 사상: ‘온라인수업’ 미개설과정에 참여하여 00시간(2021.00.00.-2021.00.00.) 이수함.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당해 학기 관련 과목 개설 시)

수학 I: 수학적 능력이~ <중략>~ 우수함. ‘온라인수업’ 미개설과정(경제수학)에 참여하여 00시간(2021.00.00.-2021.00.00.) 이수함.

9.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운영 절차 <2021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을 운영하는 경우, 학기초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교과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기록부Ⅱ 예시>

6. 교과학습발달상황(일부발취)

[1,2학년]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 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진로 선택 과목>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 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예술>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제 20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입력은 본교 교무업무지원 관리규정에 의거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고 학년말 종합적으로 인쇄하여 학급담임과 각 학년부장의 확인을 마친 후 교무운영부 담당계에서 보관한다.
2. 전산 입력 시 각 항목의 누가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교과별 성적표 및 일람표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작성 담당자가 정정 날인한다.

제 21조 【독서활동상황 관리】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란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입력한다.
2.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 22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다만, 2024학년도 대입(2021학년도 1학년부턴)기준 졸업생은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가능)하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주관기관명:‘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3.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누가기록방법(기재 방법과 관리 방법)은 NEIS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5.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 함
6. ‘1항’의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2021학년도 1학년부턴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7. ‘1’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8. 학생이 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9.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10.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제 23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리】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 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 24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시행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10의 1조)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음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 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 5 장 진급 및 졸업

제 25조 【진급 및 졸업】

본교 규칙 및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

제 26조 【진급 및 졸업 보류】

1. 공납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2. 기타 직원 사정회에서 진급 또는 졸업이 보류된 자.

제 27조 【원급자】

1. 당해 학년말의 수업일수가 수업할 일수의 2/3미만인 자.
2. 당해 학기 수강 교과 단위수가 수강해야할 총 단위수의 3/5미만인 자.
3. 당해 학기 수강한 교과가 수강해야할 총 교과수의 3/5 미만인 자.

제 6 장 표 창

제 28조 【표창의 종류와 기준】

1. 졸업 예정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 가. 학교장상 : 졸업 예정자 중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교칙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실이 없는 자
 - 2) 3개년간 과목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자(서열 명부 1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같을 경우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교과우수상 수상자)
 - 나. 운영위원장상 : 졸업 예정자 중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교칙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실이 없는 자
 - 2) 3개년간 과목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자(서열 명부 2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같을 경우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교과우수상 수상자)
 - 다. 동창회장상 : 졸업 예정자 중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1) 1순위: 학생회장이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교칙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실이 없는 자
 - 2) 2순위: 3개년간 과목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자(서열 명부 3위)
(교과 우수상 수상 과목 수가 같을 경우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교과 우수상 수상자)
 - 라. 과목별 교과우수상
 - 1) 학년(1학년)이나 계열(2·3학년 선택군별)에서 1등급(4%이내)에 해당하며, 80점 이상인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1등급(4%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나 과목만점(100점)자에게는 수여함.
 - 2) 학기말(1학기말, 2학기말)에 수여한다.
 - 마. 각종 영역 활동 우수상
행동 발달 및 각종 영역의 활동에서 두드러지거나 모범적이어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상을 수여한다.(단, 졸업 시에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실적

을 적용한다.)

1) 공로상

- 학교 교육활동에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당해 학기 중,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3일 미만인 자(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횡수 3회를 결석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2) 선행상

- 학교생활 중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면에서 두드러져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당해 학기 중,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3일 미만인 자(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횡수 3회를 결석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3) 봉사상

- 학교생활 중 봉사 실적이 뛰어나고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당해 학기 중, 미인정 결석 일수의 합계가 3일 미만인 자(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횡수 3회를 결석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4) 체육상

-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 대표로 출전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기능상

- 음악, 미술, 과학, 문예 등 기능 분야의 도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수여 기관의 상위 3위까지) 본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6) 근태상 : 출석 상태가 극히 양호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3년 개근상 : 3개 학년을 통하여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에게 3년 개근상을 수여한다.(단, 3년 개근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의 1년 개근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 3년 정근상 : 3개 학년을 통하여 결석일수가 3일 미만인 자에게 3년 정근상을 수여한다. 단, 지각, 결과, 조퇴 등은 3회를 1일 결석으로 인정하여 계산하고, 3년 정근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의 1년 정근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 1년 개근상 : 당해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에게 1년 개근상을 수여한다.

2.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가. 과목별 교과우수상 : 31조 1항 라.에 해당되는 자

나. 근태상 : 31조 1항 마. 6) 1년 개근상에 해당되는 자

3. 제 31조 1항, 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표창은 사정회의 의결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 7 장 자료의 관리

제 29조 【사용자 및 프로그램과 보안관리】

1. 각급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자료 관리 및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등록과 사용, 코드의 목록·내용 및 수정,

파일의 구조 변경 절차는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3. 다음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가. 사용자의 비밀번호 부여·갱신 및 보안교육
 - 나. 매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완료 후 자료 확정처리
 - 다. 전산실의 설치 및 보안관리

제 30조 【자료의 정비와 준용 등】

1.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사항 중 일부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서식을 활용한다.

일련 번호	정정 대상자		정정사항				입력오류 교사	정정대상 교사
	학년도-학번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 전)	정정 내용 (정정 후)	정정 사유		

- ※ 정정대상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 ※ 학급담임(담당교사) 또는 전산 담당자(보직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2.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방법과 처리 결과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용설명서’에 의하며,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체 직원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3.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의 각 과목 평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별지 1]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기반 구축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관리자,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 교사
	보안관리 계획 수립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책임자(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지정	관리자 행정실장 평가담당 평가부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홍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담당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출제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인정점 및 동점자 처리 규정, 지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출제 시 유의사항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단계별 보안관리,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예방 관련 등 연수	평가담당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 (공동출제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교과담임
		공동 출제·검토(교사 1인 출제 경우 - 교과부장 검토)	교과담임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임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임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담당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지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임
		서답·서술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교과담임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홍보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출제	평가문항 출제 및 고사원안 제출	NEIS를 통한 문항정보표 작성(성취기준, 동점자 최소화 고려 배점 부여, 성취내용 기재 등 표시) 계열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교감 교과담임 평가담당 평가부장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분할점수 산출	해당 교과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결재 및 학생 공지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교과담임	
인쇄 및 보관	인쇄 및 보관 (보안 관리)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한 문제지, 원안, 과지 보관 철저)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평가 원안 평가담당에게 인계	교감, 행정실장 평가부장 인쇄 담당자 교과담임 평가담당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 중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시행	고사 관리 유의사항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학부모 감독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철판)	학급담임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담임/감독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안내 및 지도	담임/감독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담임/감독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령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담당/감독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감독	
		결시생 답안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고사감독 배정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지 등 회수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평가담당
			답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 급 시험 감독 배치 금지	평가담당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사전 결재 후 교체)	감독	
		2인 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감독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고사감독 배정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가 후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평가담당
	답안 채점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교과담임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교과/담당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교과담임
		정답 없음, 정답 수정, 유사답안 추가, 부분점수 추가 등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지)	교과담임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임
	성적 최종 확인	학생 개인별 답안지와 채점표 직접 확인 후 날인	교과담임
	NEIS 성적 마감	학생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성적마감 처리	교과담임
	성적처리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모든 교과 성적 마감 후 성적처리	평가담당
	성적표 출력·발송	우편으로 성적표 발송 후 학부모에게 SMS 문자 안내	학급담임
	답안지 및 성적확인 자료 보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평가담당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동일교과 학급별 편차, 문항별 오답을 분석 등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교과협의회 후 교과협의록 작성)	교과담임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평가담당

[별지 2]

시기별 학업성적관리 업무 추진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방향과 방침,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채점기준, 반영비율, 실시 기간, 결사자 인정점 부여기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초학력 더딤 ◦학생 지도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실시 기간)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교과별 분할점수 산출방법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관련 평가 방법 및 기준 수립 ◦지필평가 없이 이수/미이수 처리하는 교양교과도 교과운영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개정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별 성적표기 방식과 성취수준 설정 방법 명시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 평가규정, 연간 평가 계획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연간 평가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p>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 평가부서</p> <p>평가부서 평가부서</p>
04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협의회(1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1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출제계획 수립 및 교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교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확정된 교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p>담당교과 평가부서</p> <p>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p> <p>평가부서</p> <p>평가부서</p>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1차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평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1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0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협의회(1학기 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과 검증(결재단계) 	평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본인 확인 ▸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 및 처리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2차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평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2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정기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담당교과 담당교과 담당교과

[별지 3]

정기고사 계획 및 진행 매뉴얼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1 |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4.21.(수)	평가담당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4.29.(목)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5.3.(월) ~ 5.4.(화)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5.6.(목)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5.6.(목)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1차고사 실시	5.10.(월) ~ 5.12.(수)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5.13.(목)~5.14.(금)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5.13.(목)~5.14.(금)	성적처리 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5.13.(목)~5.17.(월)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 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운영 (3일간)	5.13.(목)~5.17.(월)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5.17.(월)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5.24.(월)	학급담당	

2 | 2021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6.23.(수)	평가담당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7.1.(목)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7.5.(월) ~ 7.7.(수)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7.8.(목)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7.8.(목)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2차고사 실시	7.12.(월)~7.14.(수)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7.15.(목)~7.16.(금)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7.15.(목)~7.16.(금)	성적처리 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7.15.(목)~7.19.(월)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 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운영 (3일간)	7.15.(목)~7.19.(월)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7.20.(화)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7.21.(수)	학급담당	

3

2021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성적처리 일정(3학년)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8.18.(수)	평가담당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8.20.(금)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8.23.(월)~8.24.(화)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8.26.(목)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8.26.(목)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1차고사 실시	8.27.(금)~8.31.(화)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9.1.(수)~9.2.(목)	교과담당	서술형 평가
OMR 카드 리딩	9.1.(수)~9.2.(목)	성적처리담 당	
성적확인 및 정정	9.2.(목) ~ 9.6.(월)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운영 (3일간)	9.2.(목) ~ 9.6.(월)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9.7.(화)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9.8.(수)	학급담임	

4

2021학년도 2학기 1차고사(1,2학년) / 2학기 2차고사(3학년) 성적처리 일정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9.15.(수)	교무부장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9.27.(화)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9.29.(수) ~9.30.(목)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10.4.(월)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10.4.(월)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2차고사 실시	10.6.(수) ~ 10.8.(금)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10.11.(월)~10.12.(화)	교과담당	서술형 평가
OMR 카드 리딩	10.12.(화)~10.13.(수)	성적처리 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10.13.(수)~10.15.(금)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운영 (3일간)	10.13.(수)~10.15.(금)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10.18.(월)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10.19.(화)	학급담임	

5

2021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성적처리 일정 (1,2학년)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 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11.19.(금)	교무부장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11.26.(금)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11.29.(월)~11.30.(화)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12.2.(목)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12.2.(목)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유 있게 포장
2차고사 실시	12.6.(월) ~ 12.8.(수)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12.9.(목)~12.10.(금)	교과담당	서술형 평가
OMR 카드 리딩	12.9.(목)~12.10.(금)	성적처리 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12.10.(금)~12.14.(화)	교과담당	리딩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운영 (3일간)	12.10.(금)~12.14.(화)	교과담당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12.15.(수)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12.16.(목)	학급담임	

※ 고사 시정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작	끝	비 고
조 회	사전교육	08:40	08:50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평가시 유의사항 전달 및 출결사항 기재
1 교시	문답지 배부	08:55	09: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9:00	09:5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2 교시	문답지 배부	10:00	10:05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0:05	10:55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3 교시	문답지 배부	11:05	11:1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1:10	12:0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II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일자	5월 4일(화)				5월 6일(목)				5월 7일(금)			
	1	2	3	4	1	2	3	4	1	2	3	4
학년\교시												
1학년												
2학년												
3학년												

III

정기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시 유의사항

1. 시험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

가. 2021 교과별 평가계획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출제하고 평가

나. 학년별 동일과목 교과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 성적차를 최소화(출제문제 학년별

로 필히 공동 검토)

- 다.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에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공유금지, 메신저 전달 금지, **반드시 개인용 이동저장매체를 사용**
- 라. 출제 완료 후, 수업 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출제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리 명목으로 출제 문제 암시하는 의혹 시비 철저 차단
- 마.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배점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 최소화를 위한 소수 배점(선택형 50% 이상 권장)**. 문항마다 배점 표기하기 (마지막 장에 표로 제시해도 무방함)
- 바. 서답형의 총 배점 비율은 지필평가의 30% 이상으로 하되, **서술형(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포함), 과학 : 20% 이상, 도덕은 10% 이상) 출제**
- 사. 서답형, 서술형 문항의 경우 **문항정보표 또는 별지에 채점기준, 부분점수 등 채점방법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
 - 아. 출제 문항 중 부정적인 발문에 대하여는 진한 글씨체로 작성하고 밑줄 긋기
 - 자. 시험지 원안의 꼬리말에는 **학년도, 과목명, 학년(학과), 학기, 고사명, 전체 페이지 중 몇 번째 페이지(1/7) 등을 기록함**
 - 차. 출제한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서술형) 등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평가계에 제출**
 - 카. **교과담당교사는 평가담당 교사로부터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받아 학급별로 포장하여 여분시험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제출 이때 문제지 보관 철저.**

2. 시험답안 채점 및 결과 처리 시 유의 사항

가. 문항정보표 정답/배점 입력

- 1) 채점을 위한 정답과 배점은 교무업무시스템의 다음 경로에 교과담당교사가 직접 입력
- 2)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선택 → 조회 → 선택형-서답형 탭 → 문항별 ‘배점’ 과 ‘답안’ 을 입력하고 저장

나. 채점

- 1) 평가 후 성적처리 담당교사가 카드리딩-결과 파일 업로드하면 교과담당교사가 NEIS상에서 채점
 - 2)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고사’, ‘학년’, ‘과목’ 선택 후 조회→특정 반 선택 후 검증하여 이상이 없으면 → ‘학생답안선택형’ 을 선택 → 채점 채점 시 ‘학생답안선택형’ 란의 ‘학생답안서답형 점수’ 를 선택함(기본값)
 - 3) OMR카드에 서답형 답을 마킹하지 않고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성적관리 서답형’ 을 선택하여 채점
- 다.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점수와 결시명칭,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고, 학생답안이 없는 결시생과 학적변동 학생은 ‘결시명칭’ 또는 ‘고사별 학적변동’ 란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저장
 - 라. 학생들의 서답형 점수를 OMR 카드에 마킹하여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지필평가]-[성적 관리]를 통해 직접 입력
 - 마. 학생들의 고사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별성적일람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함.

[성적]-[성적조회]-[개인별성적일람표조회]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반’ → 조회 → 일괄출력하여 학생 개인에게 배부하여 확인

바. 학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접수
- 2) 교과담당교사는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강의실’ 선택 후 조회 → 학생 본인의 OMR 카드를 확인
- 3)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OMR카드를 다시 읽어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적파일 올리기] 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하여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재 채점을 실시함.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선다형 답은 수정할 수 없음(잠금/해제 후 서답형점수는 수정 가능)

사. 성적일람표 출력 및 학생 확인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해결 또는 기간 종료 후 실시
- 2) [성적]-[지필평가조회]-[교과목별일람표조회-강의실별]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강의실’ 을 선택 → 조회 → 출력
- 3) 성적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후 완료된 성적일람표는 교과담당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제출

아. 서답형 답안 채점시 유의사항

- 1) 채점은 해당교과의 출제교사 공동채점을 원칙으로 함
- 2) 채점은 학교 내에서 하며 학교 외부로 답안지 반출 금지
- 3) 정답은 0, 오답은 X로 답안 내용 위에 적색 펜을 이용하여 표기
- 4) 정정 사항은 두 줄을 그어 정정한 후 날인
- 5) 카드 봉투 및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 표지에 초검, 재검 교사는 서명 및 날인
- 6) 서답형, 서술형 답안 채점 시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를 반드시 기록
- 7) 서답형, 서술형 점수를 OMR카드에 이기 시 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킹
- 8) 채점 도중 발생한 추가 유사정답, 부분점수는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거쳐 추가 결재
- 9)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홍보하고, 성적의 정정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자. 성적 마감

- 1) 교과담당교사가 해당고사 성적처리 절차를 마감함
- 2)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강의실’ 을 선택 → 조회 → 마감함

IV | 학급 담임교사의 학급지도 유의사항

1. 출제 및 고사 기간 중 교무실에 학생 출입 금지 지도
2. 학급별 책상 배열 : 4(행) × 4(열)
3. 고사 당일 칠판에 재적 및 응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예 : 재적 14명, 응시 13명, 결시 1명(1101 홍길동(질병))]
※ 출결사항에 ‘사고결’은 없으며, ‘미인정결’로 표시
4. 고사 당일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지도
5.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사

전지도, 책상 위 낙서 금지 등 부정행위 처리사항 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6. 훈화를 통하여 올바른 수험태도 및 OMR 카드 작성 요령 지도

답안용 카드에 학번, 성명, 과목명, 계열코드,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록 할 것

7.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또는 샤프펜 절대 사용 금지

V | 시험 감독교사 유의사항

1. 시험 감독 배정

자녀 및 친·인척 관계,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의 감독을 금지하고, **발표된 감독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독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

2. 시험 시작 전

가. 소지품 정리 정돈 및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합 (담임교사 또는 감독 교사)

나.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대기

다.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 봉투에 수검학생 현황을 기록하고, 부감독 교사와 함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

라.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서답형·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검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지도

3. 시험 진행 중

가. OMR 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배부하고, 여분은 시험 종료 후 평가계에 제출

나. 문제지 배부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인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

다. 정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부감독 교사는 교실 뒤쪽에 위치하여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라.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부감독 교사가 동행

마. 정감독 교사는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코드를 바르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고 감독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바. **답안지 교체 허용 시간 안내** (예 : 시험 종료 5분전까지만 답안지 교체를 허용합니다)

사. OMR카드 회수용 봉투 및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필로 성명 기재

아. 결시자 확인

4. 시험 종료 후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답안지는 왼쪽에

,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맨뒤에 앉은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함

- 나. OMR카드 등 모든 답안지는 번호 순서대로 수합하고 매수를 반드시 확인함
- 다. OMR카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카드 교체 시 뒷면의 이기 여부도 확인 (OMR카드 답란에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불가)
- 라. OMR카드의 답란에 적색 플러스펜으로 표시했다라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담임과 감독교사는 수시로 환기)
- 마. 고사 중 교환하여 폐기할 OMR카드는 그 자리에서 찢어 폐기처리
- 바. 수거한 답안지 매수와 확인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봉투에 담아 즉시 평가계에 제출

5.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VI |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과목별 코드 안내

과목 코드	학년	계열	계열 코드	과목명	단위	과목 코드	학년	계열	계열 코드	과목명	단위

VII | 2021학년도 정기고사 답안지 채점-1검-2검 담당교사 안내

순	채점교사	초검(1검)교사	재검(2검)교사
1			
2			

정기고사 교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양식

1 | 2021학년도 교사원안

2021학년도 제1학기 1차고사 출제원안					계	부장	교감
과목명	과목코드 :	대상학년 : 0학년		결 제			전전
일시	월 일()	교시	응시인원 : 00명				
출제 교사 : 홍길동 ㉞ ㉞ ㉞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김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이 문제지는 ()장 ()쪽으로, 선택형 ()문항,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2. 배점: 선택형 총()점, 서답형 총()점

1. () 점
①②③④⑤
2. () 점
①②③④⑤
3. () 점
①②③④⑤
4. () 점
①②③④⑤

*** 교사원안 작성 유의 사항 ***

※ 문항별 배점 차별화, 소수점 배점도 일정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답형은 정수배점만 가능, 문항별 배점 꼭 표기!!)

1. 과목명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2. 하단의 출제원안 해당학년 반, 과목명과 면수 입력
메뉴 보기창 ⇨ 조판부호 클릭 ⇨ 지면에 적색[포리말]에서 더블클릭 ⇨ 과목입력 ⇨ Shift+Esc를 눌러 빠져나옴 ⇨ 조판부호 해제
※ 「~중 ()면 중 ()면」 글씨가 보일 때는 글씨에 더블클릭해서 들어감 ⇨ Shift+Esc를 눌러 빠져나옴
- 총 면수 숫자만 바꾸어주면 뒤에 해당하는 쪽수는 자동 입력 됨.
3. 원안의 바탕글씨는 가급적 11포인트, 줄간격 160~180 사이로 맞춰 주세요!
- 시험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편하게 보이는 쪽으로 편집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 원안 제출 전 체크할 사항

1. 시험지 1면 상단 박스에 기록한 숫자들 확인 (특히, 고사명, 날짜, 코드번호 이상유무)
2. 시험지 하단 총면수와 페이지 확인
3. 1면 <유의사항> 확인
4. 이원목적분류표와 원안 배점 일치 여부 확인
5. 서답형 배점은 정수배점만 가능함.
6. 서술형 문제의 경우 아래 형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뒷면 서술, 채점기준과 배점 등 간단히 안내^^)
7. 시험지 맨 마지막에 다음의 저작권 문구 삽입

서답형 문제(서술형 문항 포함)

6. 오늘날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양면성을 서술하시오. (답안지 뒷면에 서술, 10점)

채 점 기 준	배 점
두 측면 모두 서술하고, 관련 사례도 제시한 경우	10점
두 측면만 간단히 서술	6점
한 측면만 서술한 경우	3점
두 측면 서술했으나, 잘못 서술한 것이 있을 경우	-2점씩 감점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점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과 문항정보표				결 재	계	부 장	교 감 전결			
대 상		학 년		과 목 코 드						
대 상 학 급		~ 반		출 제 교 사		(인)				
실 시		2021년 월 일 요일 교시								
문 항	형 식 선 택 형	서 답 형	내 용 영 역	성 취 기 준			난 이 도 어 려 움	보 통 쉬 움	배 점	정 답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0	0									
11	0									
12	0									
13	0									
14	0									
15	0									
16	0									
17	0									
18	0									
19	0									
20	0									
21	0									
22	0									
23	0									
24	0									
25	0									
서1	0									
서2	0									
서3	0									
서4	0									
서5										
서6										별첨(서술형1)
서7										별첨(서술형2)
문항수	25	4					0 0 0	총점		
점수 백분율	0 %	0 %					% % %	0		
수 행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배 점		시 기			
							2021.03.02 ~ 2021.07.09.			

※ 주의 : 파란 글씨 부분은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더 많은 문제를 내실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서 행을 삽입하십시오.
***서술형인 경우에도 형식(선택,서답)에서는 서답형 번호를 매기시고 정답란에 별첨(서술형)이라고 써주세요

김 제 고 등 학 교

2021년도 ()학기 ()차 교사 ()과 서술형 평가 답안

채 점 기 준 표

계	부장	교감
		전 결

학년	해당학급	과목코드	실시 일자			
			월	일	요일	교시
출제자 :						(인)

서술형 1.

구 분	답 안 내 용	배 점
기본 답안		
인정 답안		
채점 기준 (부분배점 기준)		

서술형 2.

구 분	답 안 내 용	배 점
기본 답안		
인정 답안		
채점 기준 (부분배점 기준)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행위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다 풀고 옆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거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행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행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별지 6]

2021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차고사	점검일자	2021. .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출제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원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인쇄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시행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17. 해당 과목 평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채점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기타 의견	
-------	--

[별지 7]

학생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보고

○○학교장

보고일		보고자	
사안 개요			
학년	○학년	교사명	○학기 ○차고사
과목명		재시험 여부	○, ×
재시험 사유	시험범위오류, 문항오류, 고사관리오류, 문항유출, 문항전재, 기타		
재시험 날짜		재시험 문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내용(사안 발생 경과, 원인 및 사안 인지 경과 등) • 조치 내용(회의 개최 일시 및 결정 내용 등) • 조치 결과(민원 해결 처리에 따른 결과 등) •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협의회 회의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경위서, 가정통신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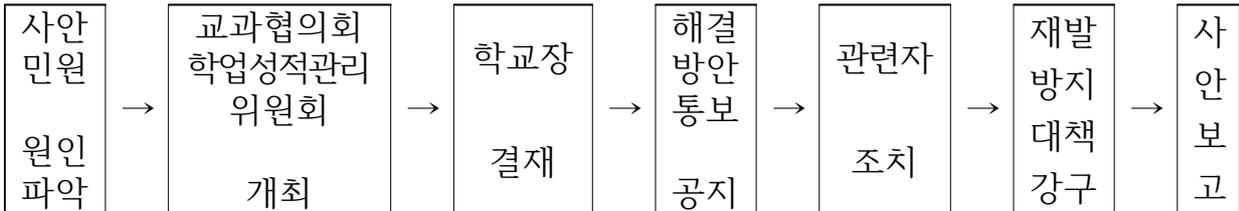
※ 학교장 결재 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 제출

※ 위는 재시험 사안 중심 예시임.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 변경 활용해야 함

[별지 8]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사안 인지 후 즉시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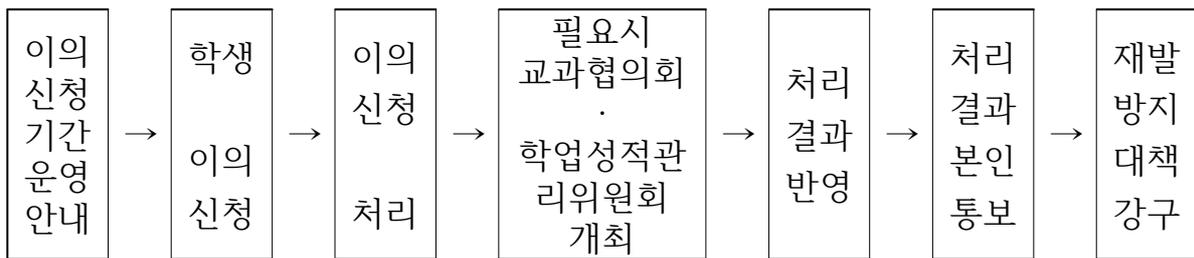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별지 9]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 운영 목적: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
- 2. 이의신청 기간: 각 정기고사 종료 후 3일간 운영, 수행평가 결과 공지후 3일간 운영함.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4. 유의사항

- 가. 교과별 평가규정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의신청 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책 논의
- 다. 교과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장 결재 후 결과 처리
- 라. 이의신청 처리 전·후 변경된 평가관련 서류는 결재 절차를 거쳐 보완
- 마. 평가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별지 10]

▣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 100%***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석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별지 11]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이하 “온라인수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교육청·학교에서 원활하게 온라인수업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수업 : 면대면 출석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중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업만 해당함
2.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출제 및 평가, 교과 상담, 학습 독려 등을 담당하는 교사
3.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소속 학교의 학생을 관리감독하고, 온라인수업에 대한 출결 상황 및 성적 등 이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교사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의 정규수업 외 보충과정으로 온라인수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제4조(종류) 온라인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충학습과정 온라인수업 : 전·출입, 편입학 등으로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
2. 미개설과목 온라인수업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

제5조(수강 자격 등) 출석수업을 대신하여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출입, 편입학 등으로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해당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2.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기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온라인수업을 승인하는 경우
3. 그 외에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강허용 범위) 제5조에 따른 온라인수업의 수강 신청 및 이수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과 단위의 수가 당해학기에 이수해야 할 교과 단위 수(중학교는 시수)의 20% 이내이며, 한 학기에 2과목 이하인 경우
2. 단, 제6조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이수 기준)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수업의 진도율의 80% 이상을 이수한다.
2. 온라인 수업의 확인학습 2개를 모두 PASS한다.
3. 1~2의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의 교과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결과의 기록 등) 온라인수업의 이수가 확정된 학생의 결과 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과 별표 9의(해설 및 기재요령 포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이수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제9조(교사의 배치) 온라인수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와 온라인수업 관리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를 배치한다.
2. 교육감은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에게 별도의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 온라인수업 관리교사를 배치해야하며,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교과담당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이 겸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수업의 관리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관리교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리교사의 업무

① 구분	② 세부 업무
온라인수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교과목 확인 • 신청 학생을 파악한 후 학생 정보 등록(1단계) 및 수강신청(2단계) 실시 •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수업 신청 및 운영 매뉴얼 (단위학교용)’참고
온라인수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학생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회원가입 유도 • 교육청 이수기준 확인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이수 기준 설정 및 안내 • 학습 현황 점검(진도율, 확인학습 제출) 및 학생 학습 독려 • 온라인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온라인수업 이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진도율/확인학습 제출 결과 확인 및 평가 실시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이수 판단
온라인수업 학습결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수업 학습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그 외 온라인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온라인수업을 이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은 이 지침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